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 인권상황 특별보고관
비사법적, 약식 또는 자의적 처형 특별보고관

참조:
AL KOR 7/2020

2020년 11월 17일

각하께,

우리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 인권상황 특별보고관과 비사법적, 약식 또는 자의적 처형 특별보고관은 인권이사회 결의안 43/25와 44/5에 따른 권한으로서 장관 앞으로 통신문을 보내게 되어 영광입니다.

이번 서신을 통해 각하의 정부가 이대준 씨에 대한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 군인의 해상 체포/억류, 심문 및 사살에 대해 그의 가족을 대리하여 이래진 씨가 충분하고 정확한 정보에 대한 접근권을 요청하고 있음에 주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된 정보에 따르면 다음과 같습니다.

- 다 음 -

2020년 9월 15일 대한민국(이하 ‘한국’) 해양수산부 공무원인 이대준 씨는 정부 소유 어업지도선을 타고 순찰을 위해 출항하였습니다.

2020년 9월 21일 01:30경 이대준 씨는 정부소유 어업지도선인 명화10호 조타실을 나섰습니다. 그는 나가면서 그의 동료들에게 서류작업을 처리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와 그의 형제인 이래진 씨에 따르면 그는 02시에서 03시 사이 실종된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 당시 어업감시선은 남한수역 연평도 남쪽 약 1.9km (1.2 miles) 해상에 있었습니다.

당일 11:30경 이 씨의 동료는 그가 사라졌음을 알고는 선체와 근처 수역을 수색했으나 그를 찾지 못했습니다. 12:51에 선원은 해양경찰청에 그의 실종을 신고했습니다. 오후에 한국 해군과 해양경찰청은 그 지역을 수색하기 시작했습니다.

9월 22일 이대준씨의 형제인 이래진 씨는 수색선에 탑승하여 9월 23일까지 수색팀과 동행했습니다. 9월 22일 18:00~18:30 사이 선장과 선원들은 분실물이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 구명조끼 수를 세었고 이래진 씨에게 해군이 구명조끼 수를 보고하라고 하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씨 또한 해군의 고위직이 선장에게 전화하여 구명조끼 수를 최대한 빨리 보고하되 군사기밀 사항이므로 외부에 발설하지 말라는 얘기를 옆에서 듣게 되었습니다.

北 군에 의한 이대준 씨의 체포/억류, 심문, 사살

9월 22일 15:30경 한국 군은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이하 ‘北’)의 배가 北 수역

등산곳 주변에 있던 이대준 씨를 포착했다는 정보를 입수하여 국방부에 보고했습니다. 이는 이 씨가 그가 실종된 장소로부터 서북서 방향으로 26시간 동안 38km를 표류하였다는 의미입니다. 한국 국회 국방위원회에 제출된 군의 보고에 따르면 北 군인들은 그에게 불잡을 수 있도록 밧줄을 던졌고, 그를 놓쳐서 2시간 동안 수색하기 전까지 3시간 동안 그를 면밀히 조사하고 감시했습니다. 北 군인들은 이 씨를 다시 발견하고 그를 해상에 둔 채로 상부명령을 1시간 더 기다렸습니다.

한국 국방부에 따르면 그날 21:40경 北 군인들은 이대준 씨에게 해상에서 10회 총격을 가했습니다. 22:00를 조금 넘어서 그들은 기름을 그의 유탄에 붓고는 불을 붙였습니다.

9월 24일 한국 국방부는 北 선원과 지상 사령부 간 대화 첩보를 바탕으로 상기 기술한 사건을 보고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2020년 9월 25일 北이 보낸 서한

9월 25일 한국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北 조선중앙노동당 통일전선부로부터 한국 대통령 앞으로 보낸 서한을 접수하였다고 발표하였습니다.

해당 서한에 따르면 9월 22일 北 해군 함정은, “불법침입자”라고 표현한, 이대준 씨에게 80m까지 접근하여 그에게 신원을 밝힐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처음에는 한두어 번 대한민국 아무개라고 답변을 얼버무리더니 더는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이 씨의 지속된 침묵 때문에 北 군은 그에게 더 접근하여 2회 총격을 가했습니다. 놀란 이 씨가 물로 들어가 무엇인가를 몸에 부착하려고 허리를 굽히는듯 보였습니다.

해안경비부 수역경비담당(Coastal Security Bureau)의 해상경계근무규정에 따라 승인된 행동준칙에 따라 함장 결정하에 北 군인들이 10발 가량을 이 씨에게 발사했습니다. 이때 그 거리는 40-50m였습니다.

발포 후 어떤 움직임이나 소리도 없었습니다. 北 군은 수색을 위해 10m까지 다가갔으나 부유물과 다량의 혈흔만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이 씨가 사살된 것으로 판단하고는 국가비상방역규정에 따라 부유물에 불을 붙였습니다.

통일전선부는 해상경계근무 강화를 지시했으며 불행한 사건의 재발을 피하기 위해 해상단속의 전 과정을 담은 체계를 만들 것 또한 지시했습니다.

경찰 조사

한국 당국은 피해자인 이대준 씨가 北으로 이탈하려 시도했다고 중간수사결과에서 밝혔습니다. 한국 법에 따르면 北으로의 이탈은 범죄입니다.

피해자의 형제인 이래진 씨에 따르면 증부지방해양경찰청 산하 인천해안경찰청은 형사사건 수사에 착수합니다. 경찰은 조서를 기록하기 위해 피해자의 여자 형제, 조카, 부인을 소환했습니다. 이래진 씨는 가족들을 여러 번 출두하게 하는 대신 한 번에 불러서 조사해주시기를 요청하였습니다. 가족은 또한 경찰서가 아닌 그들이 선택한 장소에서 진술을 기록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경찰은 이래진 씨의 진술을 9월 23일에 여자 형제의 경우 10월 13일 그녀의 집에서 기록하였습니다.

가족들은 경찰의 수사가 이대준 씨가 의도적으로 北으로 이탈하였다는 점을 증명하기 위한 정보를 찾는 데에 초점이 있다고 느꼈습니다. 가족은 단지 피해자가 숙련된 항해사이자 구명조끼와 부유물과 함께 배를 떠났다는 점 때문에 그를 월북자로 단정짓는 현재

의 수사에 깊이 불만족하고 있습니다. 가족에 따르면 한국 당국은 월북 동기로서 고액의 빚을 앓고 있었다는 사실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가족의 정보에 대한 권리

9월 21일 14:20, 이대준 씨가 근무했던 서해어업관리단은 그의 형제인 이래진 씨에게 그가 실종되었다고 처음 알렸습니다. 서해어업관리단은 이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위원회를 꾸렸고 수색에 대한 정보를 가족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이후 한국 대통령은 공개적으로 가족에게 유감을 표하였습니다. 10월 8일 피해자의 아들에게 정부 지원을 확인하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10월 21일 외교부는 형제인 이래진 씨를 만났고 면담에서 그가 제기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보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국은 이대준 씨의 체포/억류, 심문, 사살 및 유해에 관한 그 어떠한 구체적 정보도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또한 이대준 씨가 의도적으로 월북한 것인지에 관한 조사의 결과의 세부사항 또한 공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가족들은 언론을 통해 소식을 접하고 있으며 어떤 정보를 얻고자 하면 정부에 반복적으로 접촉해야만 합니다.

형제인 이래진 씨에 따르면 경찰과 가족의 교류 대부분은 사건 조사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가 의도적으로 월북한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한, 이대준 씨의 개인사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11월 6일 형제인 이래진 씨는 국방부와 접견합니다. 가족은 다음의 정보를 국방부가 제공해주시기를 요청합니다. 1) 이대준 씨가 北 군인에 의해 2020년 9월 22일 15:30경 발견된 곳의 좌표, 2) 2020년 9월 21일 12:51부터 22일 22:51 사이 北과 한국 국방부 산하 조직(해군 등 포함) 간의 VHF, SSB, NAVTEX 등의 통신망상의 대화(VHF 16번 채널을 통한 北의 ‘일방적, 정당하지 못한 통신’을 포함)

이 면담에서 국방부는 가족에게 “황해남도 강령군 금동리의 해안 지역에서 발견된 것으로 본다”는 군의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그러나 군사기밀보호법상 정확한 좌표는 공개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두번째 질문에 대하여 국방부는 이래진 씨에게 VHF, SSB, NAVTEX 통신망을 통한 대화 내용은 공개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씨는 이에 국방부가 北에 구조요청을 보냈는지 물었으나 국방부는 그렇지 않다고 답변했습니다. 이 씨가 왜 구조요청을 하지 않았는가를 묻자 장관은 구조요청지침이 없었기 때문에 보내지 아니 하였다고 답했습니다. 이 씨는 더 나아가 北이 구조활동을 가능케 하도록 국제조난신호가 발송된 바 있는지에 대해 문의하였습니다. 국방부 장관은 北 수역은 한국 영토가 아니기 때문에 국제조난신호 발송을 통해 구조요청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비록 우리는 접수된 정보의 정확성에 대해 예단하고 싶지 않지만, 우리는 北에 의한 이래진 씨의 해상 체포/억류, 심문, 사살 및 그의 유해에 관한 충분하고 정확한 정보 그리고 각하의 정부가 그가 北에 의해 잡혀 있다는 사실을 파악한 후 이 씨를 구조하기 위해 취한 조치에 관한 정보에 대한 접근권이 가족들에게 결여되어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합니다. 우리는 또한, 비록 이 씨의 월북 의도가 北과 한국 정부의 인권의무에 어떤 차이도 만들 수 없으나, 경찰 수사가 이 씨가 의도적으로 월북했다는 점을 증명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보인다는 가족들의 우려를 전달하고자 싶습니다.

상기 제기된 혐의 사실과 우려와 관련하여 본 서신에 딸린 해당 혐의와 관련한 국제인권

법률과 기준을 인용한 **국제인권법 참조 별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권이사회가 부여한 권능에 따라 우리의 책무로서 우리의 관심을 끈 모든 사건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우리는 다음의 사안에 대해 각하가 준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상기 제기된 혐의와 관련하여 어떠한 추가 정보나 의견이라도 제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해상에서 있었던 이대준 씨에 대한 포획/억류, 심문, 사살 및 그의 유해에 관한 구체적인 조사결과가 왜 가족들과 공유되지 않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3. 北에 의해 이대준 씨가 붙잡혀 있음을 알고 나서 귀 정부가 그를 구조하기 위하여 취한 조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러한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취한 조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서신과 각하의 정부로부터 받는 답신은 **누리집**을 통해 60일 후에 공개됩니다. 이후 인권이사회에 정례적으로 보고되는 보고서에서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답변을 기다리는 동안 우리는 귀 정부가 가능한 한 최대한 기밀정보를 포함하여 세부 정보를 가족들과 계속 공유하고 새로운 사실을 알리길 촉구합니다.

우리는 가까운 미래에 기자회견의 근거가 될 정보가 즉각적 주의관심이 타당하다고 불사안임을 밝히기에 충분히 신뢰할 만할 때에는 우리의 우려를 공개적으로 표명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상기 혐의의 잠재적 시사점에 대하여 더 많은 대중에게 주의를 환기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도자료는 우리가 각하의 정부와 해당 사안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접촉하였다는 점을 명시할 것입니다.

동일한 사건에 대한 혐의서한이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 정부에게도 발송되었다는 점을 양지바랍니다.

각하에 대한 우리의 최고의 경의를 확인하는 바입니다.

Tomás Ojea Quintana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 인권상황 특별보고관

Agnes Callamard

비사법적, 약식 또는 자의적 처형 특별보고관

붙임. 국제인권법참조

상기 혐의 사실과 우려와 관련하여 우리는 각하의 정부의 관심을 세계인권선언 제3조와 귀 정부가 1990년 4월 10일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이하 ‘규약’) 제6조제(1)항로 돌리고자 합니다. 각 조항은 모든 개인의 생명과 안보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고, 그러한 권리가 법률에 의해 보호되고 누구도 자신의 생명을 자의적으로 박탈당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사 의무와 관련하여서 우리는 자유권규약위원회 일반논평 제31호에 주목합니다. 위원회는 가해자에 대한 예방, 처벌, 조사 및 법의 심판을 받게 하고 비국가 행위자에 의하여 발생한 피해를 바로잡을 주의의무를 다할 당사국의 책임을 상기시킵니다(CCPR/C/21/Rev.1/Add.13, 단락 8 및 18). 규약 침해에 대한 조사 실패와 그런 침해의 가해자에게 죄를 묻지 못하는 일은 각기 별도의 규약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CCPR/C/21/Rev.1/Add.13, 단락 15). 우리는 더 나아가 위원회 일반논평 제36호를 참조합니다. 이 논평은 “조사 의무는 ... 규약 제6조제1항을 고려해 제2조제1항에 담긴 규약상 권리 보호에 암시되고 규약 권리 보장에 대한 일반적 의무에 의해 강화된다고 해석됩니다. 또한, 규약 제6조제1항을 고려해 제2조제3항에 담긴 인권침해 피해자와 그 친인척들에 대한 효과적 구제책 제공의 의무에서 시사된다[.]”라고 해석됩니다. 잠재적으로 불법적 생명 박탈에 대한 조사와 기소는 잠재적 불법사망 수사에 관한 미네소타 의정서(Minnesota Protocol on the Investigation of Potentially Unlawful Death, 2016)을 포함한 유관 국제기준에 따라서 이뤄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수사의 목표는 책임자를 법의 심판을 받게 하도록 보장하는 것, 책무성과 불처벌 예방을 촉진하는 것, 정의의 부정을 회피하는 것, 반복적 위반을 막기 위해 관행과 정책을 수정하기 위해 필요한 교훈을 도출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수사에 대한 가족 구성원의 참여와 관련하여서 위원회 일반논평 제36호는 나아가 “당사국은 피해자의 최근친에게 수사에 관한 유관 세부사항을 공개하고 그들이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는 일을 허용하고 그들에게 수사에서의 법적 지위를 마련해 주어야 하며 취해진 수사절차, 수사에서 찾은 결과, 결론, 권고에 관한 정보를, 공익과 사생활 및 직접 영향을 받는 개인의 기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강력한 필요에 의해 정당화되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편집만을 통해, 대중에 알려야 합니다.” 우리는 또한 비사법적, 자의적, 약식 처형의 효과적 예방과 수사에 관한 국제연합 지침개정판(미네소타 의정서) 또한 참고하려 합니다. 특히 “실종자/사망자의 가족 구성원 또는 가까운 친척의 수사 참여는 효과적 수사의 중요한 요소이다. 국가는 수사의 완결성을 타협하지 않는 선에서 수사에 모든 가까운 친척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만 한다. 고인의 친인척을 찾아서 그들에게 수사 정보를 알려야만 한다. 가족 구성원은 법적 지위를 부여받아야 하며 수사체제나 당국은 그들에게 수사 진척에 대한 정보를 모든 단계에서 시의적절한 방식으로 알려야 한다. 가족 구성원 수사당국으로부터 필요한 수사 단계가 무엇인지에 관한 제안과 의견을 내고, 증거를 제시하며, 그들의 이익과 권리를 과정 전반에서 주장할 권한을 인정받아야만 한다. 그들은 수사와 관련된 어떤 공청회든지 공지받고 접근할 권한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들은 사전에 수사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받아야 한다”(단락 35).

진실에 대한 권리에 대해서 우리는 “가족 구성원은 사망의 원인에 대한 정보를 구하고 획득하며 상황, 사건 및 사망으로 이끈 원인에 대한 진실을 알 권리를 가진다. 잠재적으로 불법적 사망인 경우, 가족들은 최소한으로 상황, 유해의 위치와 상태에 관한 정보와 그때까지 밝혀진 사망의 원인과 방식에 관한 정보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는 점을 주목합니다(미네소타 의정서 단락 11).